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3. 7. 16(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6월 30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6월 30일
- 다. 상 정 일 자 : 제6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 7. 14) 상정
검토보고,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2. 제출결산규모 : 생 략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해수)

1. 총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4,047억 7,219만 5,42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88억 2,291만 8,578원으로 잉여금이 1,459억 4,927만 6,845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2001년도 잉여금 대비 35.1%인 379억 4,996만 7,224원이 증가 되었음.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96.9%, 사고이월이 18.8%, 계속비 이월이 6.9%증가한 반면, 보조금 사용잔액 44.7%와, 순세계잉여금 7.2%가 감소되었음. 명시이월비가 대폭 증가된 것은 연중 사업계획수립의 부적절함과 연말에 무리하게 팽창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잉여금 증감내역 》

(단위 : 원)

적요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2001년도(A)	107,999,309,621	32,680,394,770	5,828,550,200	41,531,817,500	4,678,315,236	29,829,256,915
2002 년도	145,949,276,845	64,346,998,000	6,922,960,190	44,404,865,010	2,588,686,348	27,685,767,297
증 감(B)	37,949,967,224	31,666,603,230	1,094,409,990	2,873,047,510	△2,089,628,888	△2,143,489,618
비율(B/A)	35.1%	96.9%	18.8%	6.9%	△44.7%	△7.2%

가. 세입결산 총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예산액은 3,218억 571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4,018억 4,647만 8,470원의 105.8%인 4,251억 7,307만 4,853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5.2%인 4,047억 7,219만 5,423원을 수납하여 4.8%인 204억 87만 9,430원이 미수납 되었음.

한편 예산액보다 32.1%이며, 예산현액 대비 5.8%로서, 징수 결정액이 증가하였는바, 세입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한 판단으로 세입예산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결산 총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출예산액은 3,218억 5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00억 4,076만 2,470원을 합하여 세출 예산현액은 4,018억 4,647만 8,470원임.

이중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2,588억 2,291만 8,578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156억 7,482만 3,200원을 제외한 273억 4,873만 6,692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의 6.8%로서 2001년도 329억 8,393만 5,747원보다 2.7% 감소하여 일반회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가. 일반회계

- 2002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6건에 590억 9,824만 7,430원, 사고이월이 50건에 46억 765만 5,7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19억 8,306만 6,940원으로서,
- 명시이월은 106건중 공기부족이 72건, 용지보상지연등이 23건, 공기미도래 11건이며, 사고이월은 50건중 공기부족이 21건, 용지보상지연등이 22건, 공기미도래 7건으로 이월 되었음.
- 계속비는 폐기물소각장 건설과 동지역 오·우수분류 관거공사로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예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에 52억 4,875만 570원과 사고이월 6건에 23억 1,530만 4,460원 및 계속비이월 9건에 324억 2,179만 8,070원으로서, 이 또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는

《 불용액 내역 》

(단위:천원)

세 세 항 별	금 액		비 율	증 감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계	22,972,922	12,860,733	100%	△10,112,189	0 계획변경취소
경상적 경비	2,514,326	1,917,754	14.9	△596,572	0 집행사유 미발생
인 건 비	2,394,693	1,896,188	14.7	△498,505	0 예산절감
보 조 사 업	7,290,984	2,633,141	20.5	△4,657,843	0 예산집행잔액
자 체 사 업	2,529,282	2,172,361	16.9	△356,921	
기 타	8,243,637	4,241,289	33.0	△4,002,348	0 예비비등기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28억 6,073만 3천원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비 경상적경비 14.9%인 19억 1,775만 4천원, 인건비 14.7%인 18억 9,618만 8천원, 보조사업 20.5%인 26억 3,314만 1천원, 자체사업 16.9%인 21억 7,236만 1천원, 기타 33.0%인 42억 4,128만 9천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44.0%로서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사업비등 전체가 감소하였는바, 2002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감소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노력의 결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하겠음.

4. 종합 의견

- 이와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8%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으며, 잉여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세심한 예산 편성이 요구 됨.
-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이 전년대비 17.1%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44.5% 증가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불요 불급한 사업의 투자를 지양하여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줄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당기 순손익은 수익 69억 4,063만 572원, 비용 51억 555만 5,416원으로 당기 이익 18억 3,507만 5,156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총괄 원가 계산상 톤당 생산원가도 696원으로 전년도 729.10원 보다 톤당 33.1원이 감소하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나, 공기업 상수도 보급률이 인구대비 59.3%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촌지역 수질오염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해야하므로 지속적인 투자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결산검사는

- 2003년 5월 26일 조명호 의원의 4명(조남철, 구재이, 이성훈, 김영일)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3년 5월 26일부터 2003년 6월 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음.

-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세외수입변상금 미수납액 관리 부적정, 지방세 체납액 관리 부적정, 특정세원 부과 징수 및 관리 부적정, 예산현액 관리 부적정, 공무원 교육의 체계적 실시방안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거 사업 진행 등을 지적하였으며,
-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용자금 미수액과 과태료등 미수납액 누적과 불용액 과다등을 지적 하였음.
- 기금회계에서는 대장미비치, 기금 적립의 부적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미개정, 기금예금관리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권고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감사 보고서를 제출 받았음.
-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고정부채상환에서 총괄원가가 요금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타 회계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경영 개선 방안으로, 전문직 공무원 확보와 재고자산관리의 개선과 수도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승인(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